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96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의 안전검사증 삽입 금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2.

3. 회 부 일 : 2026.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는 내용의 안전검사증 삽입 금지 (안 제16조제5항 신설)

가. 제안배경

현행법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에 해당 기구의 정원·운항구역 등을 지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 때 운항구역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기준²⁾으로

-
-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에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운항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등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정원·운항구역 등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분실 등의 신고와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원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내부 구조물에 관한 사항
2.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운항구역을 영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 수상오토바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항구역은 「선박안전법」 상 항해구역인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과 평수 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 할 수 있는 구역인 한정연해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³⁾

【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구역 구분 】

구역	범위
평수구역	호수·하천 및 항내 등 파도의 영향이 적은 잔잔한 수역
연해구역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
근해구역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원양구역	모든 수역
한정연해구역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수상레저기구에 한정된 별도 구분)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되는 어선의 기관을 사용하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

- 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운항구역”이란 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운항할 수 있는 최대 구역으로서 기구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1. 해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항해구역으로서 평수구역(平水區域), 연해구역(沿海區域),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

나. 한정연해구역(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별 최고 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이 중 연해구역은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 등을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국내 연안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 등 인근 국가의 해역까지 항해가 가능한 구역임.

그런데 2024년 5월부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내 “운항과 관련된 조건”란에 “국내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면서 연해구역으로 운항구역이 지정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일본 등 인근 해역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해졌음.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 서식 】

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일록) 제 호 (Certificate No:)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 ☐ 신규 ☐ 정기 ☐ 임시 New Renewal Temporary <table border="1"> <tr> <td>종류 (Kind of Water leisure craft)</td> <td>기구명 (Name of Water leisure craft)</td> <td>총톤수 (Gross Tonnage)</td> </tr> <tr> <td>승선 정원 (Number of crew)</td> <td>제조 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Y/M/D))</td> <td>등록 번호 (Official Number)</td> </tr> <tr> <td>제원 (Data)</td> <td>기관형식 (Cycle of Engines)</td> <td>기관 번호 (Official Number of Engines)</td> </tr> <tr> <td>길이 (Length)</td> <td>너비 (Width)</td> <td>깊이 (Depth)</td> </tr> <tr> <td>최대 출력 (Maximum Power)</td> <td colspan="2">최고속력 (Maximum speed)</td> </tr> </table> 운항구역 (Navigation Area) 운항과 관련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유효기간 (Validity) <table border="1"> <tr> <td>☐ 사업용 (For Business)</td> <td>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td> </tr> <tr> <td>☐ 개인용 (For Individual)</td> <td>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td> </tr> </table>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Craft Act and Article 15, clause 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년(Y) 월(M) 일(D) 해양경찰청장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직인 안전검사 대행기관장 (President of the Agency for Safety Survey) 210mm×297mm [박상지 120g/㎡]	종류 (Kind of Water leisure craft)	기구명 (Name of Water leisure craft)	총톤수 (Gross Tonnage)	승선 정원 (Number of crew)	제조 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Y/M/D))	등록 번호 (Official Number)	제원 (Data)	기관형식 (Cycle of Engines)	기관 번호 (Official Number of Engines)	길이 (Length)	너비 (Width)	깊이 (Depth)	최대 출력 (Maximum Power)	최고속력 (Maximum speed)		☐ 사업용 (For Business)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 개인용 (For Individual)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개인용 2022 검사유효기간: 위 기재된 연도부터 5년 수상레저사업자용 2022 검사유효기간: 위 기재된 연도부터 1년
종류 (Kind of Water leisure craft)	기구명 (Name of Water leisure craft)	총톤수 (Gross Tonnage)																		
승선 정원 (Number of crew)	제조 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Y/M/D))	등록 번호 (Official Number)																		
제원 (Data)	기관형식 (Cycle of Engines)	기관 번호 (Official Number of Engines)																		
길이 (Length)	너비 (Width)	깊이 (Depth)																		
최대 출력 (Maximum Power)	최고속력 (Maximum speed)																			
☐ 사업용 (For Business)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 개인용 (For Individual)	년(Y) 월(M) 일(D) ~ 년(Y) 월(M) 일(D)																			

해당 문구는 시행규칙에 따른 운항구역 지정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실무상 삽입된 것으로,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검사중에 기재됨으로써 본래 운항 가능한 항해구역이 임의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임.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처럼 안전검사증의 일부 기재 내용이 안전검사 결과와 혼동되거나 별도의 운항 제한으로 오인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번 사안과 같이 법령상 근거 없는 내용이 안전검사증에 기재되어 본래 운항이 가능한 항해구역을 운항하지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건별로 시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금지규정을 두어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검사중에 기재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현행법⁴⁾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안전검사증 발급 업무 전체를 검사대행자⁵⁾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안전검사증 발급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검사대행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면, 현행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음.

반면 해양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 것이 원인이라면, 우선 해양경찰청 스스로 해당 지시를 시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 관련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수행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내부통제만으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 처리의 시정이나 재발 방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다음 단계로서 입법을 통한 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무부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입법보다는 재량의 일탈·남용 문제로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며 있음.

참고로 유사입법례로서 「선박안전법」⁶⁾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어선법」⁷⁾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또한 기재할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입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6)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어선법」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흡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검사증 기재 오류로 인한 문제의 재발 가능성, 현행 법체계 및 유사입법례와의 정합성, 행정적 정비를 통한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자와 정부 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서 안전검사증에 기재할 사항으로 정원·운항구역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기재 내용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현행 법체계에 맞게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사입법례에서도 별도의 기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은 금지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안전검사증에 “국내 운항에 한함” 문구가 기재되어 발생한 혼선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문구를 삭제(’26.4.21.)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완료⁸⁾됨을 밝힘.

8) 【안전검사증 “운항과 관련된 조건” 기재 관련 진행 경과】

- ① 수상레저지구 안전검사증 운항조건란에 “국내운항에 한함” 기재(’24.5월~)
 - 해당 조치 이후 관세청에서 ‘국제무역선 전환 승인’ 불허로 국제항해 제한 발생
- ② 대한요트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운항에 한함”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발생(’26.1.8~/국민신문고 등)
- ③ 대한요트협회와 ‘요트의 국제항해 불가’관련 업무협약(’26.2.26.)
- ④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국제항해 관련부서(해수부)에 유권해석 요청(’26.4.6.)
- ⑤ 검사대행기관에 “국내운항에 한함” 문구 삭제 지시 및 대한요트협회에 국제항해 시 준수사항 협조 요청(’26.4.21.)

현행	개정안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는 운항구역·승선정원·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입해선 안된다.</u>

문의처

02)6788-5425